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4
----------	-----

2019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정인 의원

나. 발의일자 : 2019년 3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라. 상정결과 :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4월 2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정인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2)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3)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정욱)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위원 위촉 중에 있으며, 5월 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할 예정임.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이었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서울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였으므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¹⁾되기까지는 상기 위원회가

이에 대한 기능을 승계하고 있으며, 28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소관·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장애인이 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²⁾하면서도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디자인 정책방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것처럼 비취질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혀옴.

- 한편,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한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은 위원회 위촉 시 고려사항으로 소수 계층 참여 확대 노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장애인을 최소 1명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7.8)

○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소수계층 참여 확대]

- 여성비율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 이상
- 장애인비율 :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단, 위원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수의 3%이상 위촉 노력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이 관련 지침과 조례에 충분한 근거가 있고, 현재 도 시디자인위원회에 2명의 장애인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가능하다고 밝힘.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기능에 장애인 등을 고려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행하여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의 위원회 참여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동 조례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취지로 이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4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정인 의원 (1명)
찬 성 자 : 이상훈, 이승미, 권순선,
전병주, 박순규, 여 명,
이성배, 신정호, 김소영,
전석기, 박기재, 김인호,
임종국, 김창원, 안광석,
노승재, 이태성, 홍성룡,
문병훈, 채유미 의원 (20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